

1. 개정이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‘20.8.12. 공포, ’20.10.13. 시행예정)으로 동법 시행령에 치료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역학조사관 임명권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까지 확대된 사항을 임명장 서식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 사항 반영(안 제31조의5, 별지 제21호의2서식)

나. 역학조사관 임명권자 확대 사항 반영(별지 제30호의4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항 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6조제2항”을 “법 제3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5 중 “영 제23조의2제2항”을 “영 제23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의3제2항”을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의3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, 별지 제30호

의4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) ① ~ ④ (생략) <u>⑤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6조 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 가 및 관리를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 다.</u> <u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병 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 력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.</u> 제31조(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) ① <u>법 제36조제2항</u> 후 단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,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그 밖의 세부 사항 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. 1. ~ 3. (생략)	제14조의2(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⑤ ----- 제4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 질병관리청장 ----- -----. 제31조(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) ① <u>법 제36조제3항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질병관리청장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의5(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) <u>영 제23조의2제2항</u>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(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.	제31조의5(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) <u>영 제23조의3제2항</u> 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